

식품안전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개정안

# 올해 꼭 알아두어야 할 식품위생개정법

지난 2004년 12월 29일 국민 건강을 위한 식품안전 강화를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개정안이 국회 의결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식품업계를 강타했던 '만두파동' 이후에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여론이 고조된 분위기에서 위해식품 제조·유통 업체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발의되어 시민단체와 식품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글\_김영주 기자



## 위해식품 근절을 위한 식품위생법개정안

지난해 식품업계의 가장 큰 이슈는 '만두 파동'이 꼽힌다. 폐기처분해야 할 짜투리 단무지로 만두소를 만들었던 악덕 업체가 적발되면서 시작된 '만두 파동'은 여론의 강한 비난을 받으며 일파만파 퍼져나가 만두 업체는 물론 식품업계 전체를 흔들어놓았다. 이 사건으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열망이 커졌고 안전한 식품을 위한 제도적 정치가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해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위해식품 처벌을 강화하는 식품위생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부정업주 동종업소운영 영구제한, 벌금 및 포상금 상향조정, 식품위생감시원 권한강화 등 전체적으로 안전한 식품 확립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이에 시민단체는 제도적 안전관리로 식품 관련 범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조속한 시행을 주장했고, 식품업계는 식품안전 강화라는 기본 취지에는 동감하나 지나친 규제로 인해 식품산업을 위축시키고 소비자 권익을 지나치게 보호하는데만 초점이 맞춰졌으며 포상금 확대로 식파라치가 양산될 것이라고 지적하는 등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국회는 식품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현행에 지나치게 맞지 않는 규제는 완화해 지난 12월 29일 식품위생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안이 의결됨에 따라 새로운 식품위생법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 식품위생법개정안 주요 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위생감시기능 강화 (법 제17조제2항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직으로 전환된 이후 유착 관계에 의해 관할 지역 위생감시가 소홀해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보건복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다른 관할 구역에 대해 위생점검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로 위생상태를 감시할 수 있게 되어 유착 관계를 떠나 위생 감시가 잘 이루어지도록 했다.
- 시민식품감사인제도 (법 제20조의3 신설)  
식품제조과정에서 위생관리에 대해 영업자가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는 자율관리를 기본원칙으로 하되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위생관리상태를 점검받도록 하는 시민식품감사인제도를 도입했다. 시민식품감사인제도는 식품제조회사가 소비자단체나, 비영리민간단체, 식품학 교수 등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위촉해서 분기별로 1회 이상 영업소의 위생상태를 점검하는 제도이다.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식품위생감시공무원에 의한 출입이나 검사를 면제 받을 수 있다.
- 영업허가 등 제한 강화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 및 위해식품 제조·판매자에 대한 형량 하한선 적용 (법 제74조 신설)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소에 대해 장기간 식품 관련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 조항으로 위해식품의 제조·판매금지 등을 위반해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업주는 5년 동안 같은 종류 영업을 하지 못한다. 또한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할 수 있도록 상한선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조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판매의 경우 판매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한선도 규정했다.

○ **위해식품 회수 의무화 (법 제31조의2 및 제58조제1항)**

종전에 시행하고 있던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을 유통시켰을 경우 회수하도록 했던 제도가 잘 운영되지 않아 회수 제도를 의무화했다. 위해식품 등을 제조·수입한 영업자는 그 식품을 회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한 회수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면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다.

○ **포상금 지급기준 인상 (법 제71조의2)**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했던 포상금 30만 원을 1천만 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포상금이 지나치게 낮아 신고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높여 법령 준수율을 높이겠다는 의도이다. 🍷

이번엔 ‘**食파리치**’ 주의보

지난해 1회용품 파파라치들이 기승을 부린데 이어 식품위생법개정안을 두고 **食파라치**들이 활기를 띠 것으로 보여 주의를 요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전국에서 **食파리치**들의 고발이 꼬리를 물고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으로 위반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3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던 기준을 1천만 원 이하까지 확대해 초비상 사태를 맞게 된 식품업계는 그야말로 울상이다. **食파라치** 활동 영역 또한 다양해서 현행 식품위생법 11조에 명시된 ‘식품의 경우 허위 표시 또는 과대광고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와 광고를 해서 안된다’는 조항을 들어 음식을 광고물을 표적으로 삼거나 음식에 머리카락이나 벌레 등 이물질들을 집어넣어 협박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식품업계에서는 이러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으로 식품업체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어 각 업소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Plus info

## 이것도 알아두세요

○ **기존업주 교육 시간 3시간으로 단축 시행**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식품 관련 영업자의 위생의식 강화를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부활시켰던 기존 업주 위생교육 시간을 매년 4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 변경했다.

○ **식약청, 타르계 색소 적색 2호 사용금지 권고**

지난해 환경단체가 발암 위험, 알레르기 및 천식 유발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사용 금지를 촉구했던 타르계 색소 ‘적색 2호’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사용금지를 권고했다. 이에 초콜릿, 젤리, 사탕류 등 해당 제조업체들도 ‘적색2호’ 사용을 중단하고 대체물질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

환경부는 지난 1월 1일부터 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하지 못하도록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따로 제출해야 쓰레기 수거가 가능하게 됐다.

음식물류 폐기물 여부는 동물 등의 먹이로 사용가능한지를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공통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지역에 따라 예외를 두고 있다.

배출할 때는 과일껍질은 최대한 수분을 제거하고 통배추나 통무 등은 잘게 썰어 부피를 줄여야 한다. 특히 분쇄시설의 고장을 유발시킬 수 있는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등을 비롯해 육류의 털과 뼈다귀, 패류 껍데기, 견과류의 껍데기와 핵과류 씨 등은 일반쓰레기로 분류해 버리고 뼈·패류 껍데기와 살코기가 붙어있어 구분이 어려운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이 가능하다.

음식물 쓰레기 기준은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